

의정활동보고서

제196회 임시회(2005. 2. 15 ~ 2. 2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연초 각종 행사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사회 복지시설과 생활현장을 찾아 온정을 나누시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절기 각종재난 예방관리와 신년설계를 성실히 준비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에도 추진해야할 당면한 현안사항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축된 국내 소비와 투자가 되살아나도록 경제 활력화에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나갈 때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곧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오는 기업환경 시스템을 재 구축하여 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기업의 생산력을 높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내 39개의 대학에서 매년 4만여명의 청년일꾼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대학의 공적자산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기업에서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방이 살아나는 최첨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지역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데에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5년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절할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하여, 도민의 참뜻을 충실히 대변하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가 더 한층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알찬 도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2. 15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哲 雨

차 례

I. 개 황
II.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3. 위원회 활동사항

VI. 기타사항

VII. 5분 자유발언

부 록

조 록 안

1.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증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결 의 안

1. 일본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 규탄 결의문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6회 임시회는 2005년 2월 15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22일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5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2월 15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종철·황상조·권종연 의원)을 청취한 후, 제196회 경상북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정에 관한 보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관련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회기기간 중 본회의가 개의하기 전인 2월 15일 10:00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2월 15일부터 동월 18일까지 4일간 2005년도 업무보고, 조례안·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을 심사하였다.

2월 22일(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의결한 후 제19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수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 공고일 : 2005. 1. 31(월)

라. 집회일시 : 2005. 2. 15(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 2. 15 ~ 2. 22 (8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70회)

○ 상임위 회의 : 15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2.15(화) 11:00 (제1차)	1. 5분 자유발언 ○ 이종철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 ○ 황상조 의원(경산, 행정사회위원회) ○ 권종연 의원(안동,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2.15(화) 11:00 (제1차)	2. 제19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도정에 관한 보고 4.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관련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원안가결 " 원안가결
2005. 2.22(화) 11:00 (제2차)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영덕군, 손경찬)	원안가결 " " " " "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2. 4(금) 14:00(제1차)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2.17(목) 14:00(제2차)	○ 200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 제1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2.17(목) 11:00(제1차)	○ 2005년도 업무보고 -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2005. 2.18(금) 11:00(제2차)	○ 2005년도 업무보고 - 과학정보산업국, 감사관실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2.15(화) 10:00(제1차)	○ 일본 시마네현의회 의원들의 독도의 날 제정 관련 규탄 결의문 채택	원안가결
2005. 2.17(목) 11:00(제2차)	○ 2005년도 업무보고 - 경도대학, 자치행정국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 "
2005. 2.18(금) 11:00(제3차)	○ 2005년도 업무보고 - 자연환경연수원, 보건복지여성국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5. 2.16(수) 11:00(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림수산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p>원안가결</p> <p>수정가결</p>
2005. 2.17(목) 11:00(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5. 2.16(수) 11:00(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국 ○ 2005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유보
2005. 2.17(목) 11:00(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원 	

<경제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5. 2.16(수) 11:00(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상실 	
2005. 2.17(목) 11:00(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국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5. 2.15(화) 14:00(제1차)	○ 2005년도 업무보고 - 건설도시재난국	
2005. 2.16(수) 11:00(제2차)	○ 2005년도 업무보고 - 소방본부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분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결		부결			
			원안	수정				
계	8 (277)	7 (273)	6 (241)	1 (31)	(1)	(1)	1 (3)	
조례안	소계	7 (132)	6 (129)	5 (113)	1 (15)	(1)	1 (3)	
	의회제안	2 (13)	1 (12)	(5)	1 (6)	(1)	1 (1)	
	도지사제출	5 (98)	5 (96)	5 (89)	(7)		(2)	
	교육감제출	(21)	(21)	(19)	(2)			
예산·결산	(25)	(25)	(12)	(13)				
동의·승인	(74)	(74)	(73)	(1)				
건의안	(10)	(10)	(9)	(1)				
결의안	1 (11)	1 (11)	1 (11)					
기타안	(25)	(24)	(23)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9 (280)	8 (276)	7 (130)	(25)	(74)	(10)	1 (11)	(25)	(1)	(1)	1 (3)
의회 운영	1 (9)	1 (9)	1 (6)				(2)		(1)		
기획 과학	(18)	(17)	(10)		(5)	(1)		(1)			(1)
행정 사회	5 (82)	(81)	4 (54)		(24)	(1)	1 (2)				(1)
교육 환경	2 (37)	2 (37)	2 (27)		(9)			(1)			
농정	1 (18)	(17)	(5)		(10)	(2)					1 (1)
경제 문화	(40)	(40)	(16)		(20)	(2)	(2)				
건설 소방	(20)	(20)	(11)		(6)	(2)		(1)			
특별	(25)	(25)		(25)							
본회의	(31)	(30)	(1)			(2)	(5)	(22)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3 (102)	(8)	1 (13)	(11)	(20)	(9)	(8)	(13)	(10)	2 (14)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1 (5)		1 (1)		(1)		(1)			(2)
행 정 사 회	2 (12)	(5)	(3)	(1)	(1)					2 (2)
교 육 환 경	(23)			(1)		(9)		(12)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23)		(9)	(3)			(7)			(4)
건 설 소 방	(31)	(3)		(5)	(17)			(1)	(3)	(2)
특 별 위 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101)	2 (101)				1 (1)
의회운영						
기획과학	(4)	(4)				1 (1)
행정사회	2 (11)	2 (11)				
교육환경	(22)	(22)				
농 정	(8)	(8)				
경제문화	(22)	(22)				
건설소방	(31)	(31)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채희영의원외16인 (2005. 2. 3)	경상북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5. 2. 5)
의회운영위원장 (2005. 2. 4)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
경상북도지사 (2005. 2. 5)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2. 5)
경상북도지사 (2005. 2. 5)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 규명 실무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회 (2005. 2. 5)
경상북도지사 (2005. 2. 5)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관한 조례안	교육환경 (2005. 2. 5)
경상북도지사 (2005. 2. 5)	2005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농수산 (2005. 2. 5)
경상북도지사 (2005. 2. 7)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5. 2. 7)
경상북도지사 (2005. 2.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2. 7)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2005.1.17
2004.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05.1.17
2004.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2005.1.17
2004.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2005.1.17
2004.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	2005.1.17
2004.12.2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	2005.1.17
2005.1. 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	2005.1.27
2005.1. 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	2005.1.27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교육환경	2005. 1. 18 ~ 1. 19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경주시 양남면 수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선충 피해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황 파악 및 방제대책 협의 • 참석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호 위원장, 김성하 간사, 김순견, 김준호, 박종욱, 이 달, 장미향의원
농 정	2005. 1. 21	포항시, 영양군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 피해지역 현지 확인 • 참석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규삼 부의장, 이용석 위원장, 강영서, 김주연, 박승학, 방유봉, 손만덕, 신영호, 이상효의원
의회운영	2005. 2. 4	운영위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개정 의결 • 일본 시마네현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 참석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순덕 위원장, 박승학 간사, 김병진, 김성하, 이호근, 정무웅, 정상진, 한혜련, 황상조의원

4. 기타 사항

○ 전국 시·도의회협의회 해외연수

- 일 시 : 2005. 1. 17 ~ 1. 24
- 장 소 : 호주, 뉴질랜드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산업평화대상수여식

- 일 시 : 2005. 1. 18(화)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한혜련 간사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제도 연수

- 일 시 : 2005. 1. 23 ~ 1. 30
- 장 소 : 홍콩, 마닐라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오찬간담회

- 일 시 : 2005. 1. 26(수) 12:00
- 장 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신년교례회

- 일 시 : 2005. 1. 27(목)
- 장 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이철우 의장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인사 정책과제 발표회

- 일 시 : 2005. 2. 1(화) 11:00
- 장 소 : 경산 상대온천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등

○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 대회

- 일 시 : 2005. 2. 3(목) 10:00
- 장 소 : 청와대 영빈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제5·6대 임원 이·취임식

- 일 시 : 2005. 2. 3(목)
- 장 소 :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박승학, 방대선, 윤경희, 장미향의원

○ 7억불 외자유치 및 최우수기관 표창기념 유관기관 및 기업인초청 간담회

- 일 시 : 2005. 2. 3(목)
- 장 소 : 구미 센츄리호텔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김석호의원

VI. 5분 자유발언

□ 제1차 본회의(2005. 2. 15)

이종철의원 (영천시, 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의장님, 이의근 지사님, 도승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원은 경북지역의 축산업계와 축산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 관련하여 그 해소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가축에 대한 방역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우리도의 구조조정으로 '98년10월21일 폐쇄된 이후 영천·경산·청도지역의 농축산농가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부지소 폐쇄 전에는 3개 시·군의 수많은 축산농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소를 수시로 방문하여 질병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소가 폐쇄된 이후에는 본소와의 거리 관계로 양축농가의 이용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 영천축협이 임직원과 축산관련 협회 양축농가 161명이 서명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부활을 간절히 건의한 사실을 지사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4일 경상북도수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질병예찰과 전염병의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사실과 최근의 소 브루세라병 등의 발병으로 가축 전염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소의 부활은 영천, 청도, 경산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 지역의 축산농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천지역에 온다면 영천시에서는 사무소를 제공하고 인력과 장비만 오게 되도록 영천시가 협조하기로 했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한 조정이 아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에게 질병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인 남부지역의 6,000여 농가는 안심하고 양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상조의원 (경산시, 행정사회위원회)

경산출신 행정사회위원회소속 황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도 우리를 분노케 하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시마네현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어불성설의 소식들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13일 일본시마네현 지방의회의 한 관계자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서 100년전인 1905년2월22일 시마네현이 시마네현고시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지역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부르고 자신들의 부속도서로 고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념하여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아직 시마네현이 지방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나 이를 주도하고 있는 시마네현 지방의회 내의 독도문제 모임에서 총38명의 의원 중 36명이 참여하고 있어 오는 정기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임의 사무국장인 ‘조다이 요시로’라는 현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다케시마의 날을 마련하여 일본의 영유권 확립을 위한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망언들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민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한 술을 더 떠서 시마네현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시마네현이 다시 우리 300만 경북도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마네현은 지난 2월2일 저녁부터 PSK, BSS, NKT 등 일본의 3개 민영지방TV 방송을 통해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스팟광고를 A급 시간대에 주1회씩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는 앞으로 한 달동안 “돌라달라, 성급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해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명명해 일본땅으로 고시한지 100주년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마네현은 현 청사 앞에 대형 전광판을 통해 “다케시마는 우리의 영토이다. 돌려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엿한 한 주권국가의 영토를 두고서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고시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만든다는 시마네현의회, 거기에 편승해서 TV광고,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독도는 자기네들의 영토라고 돌려달라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시마네현, 모두 제정신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를 보면서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이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으며 그들의 오래된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이 아직도 그들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였음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요, 역사적 진실입니다.

특히 우리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10월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독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편입의 농도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실효도 없습니다.

또한 일제의 패망 후에도 우리 한국은 1951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며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마네현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의적으로 다케시마라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의 일본영주권 확립을 운운하는 것은 추악한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 침략적 근성의 망동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번 망동의 주역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지방의회는 우리 경상북도와 이미 1989년 자매결연을 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은 1990년10월1일부터 현재까지 국제교류원을 상호 파견하여 왔으며 시마네현의회도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1990년부터 상호간 의회친선방문은 물론이고 1992년부터는 도의회친선의원연맹과 현의회한·일친선의원연맹과의 사이에 공식적인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친선 및 교류협력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가 보여준 이번의 망동은 이제까지 어렵게 쌓아온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중한 우정에 찬물을 끼얹고 그동안 신의로 대하여 온 우리 300만 경북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기본적인 양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시마네현과의 모든 교류를 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 시마네현에 가 있는 경북도공무원을 즉각 소환하고 경상북도에 파견나와 있는 시마네현의 공무원은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외 직·간접적으로 시마네현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력을 일체 중지하고 엄중하게 그들의 잘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 없는 한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조치를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지방의회에서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동시에 교류협정파기 등 경상북도의회가 취할 수 있는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두고 중앙정부에서도 외교적 마찰만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극적 무대응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존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독도문제에 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연의원 (안동시, 기획위원회)

안동출신 기획위원회 권종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을유년 한해가 질높은 도정과 내실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무서운 존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0조내지58조에 의거 재난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현장대응 중심으로 재난관련 지방조직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소방방재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으로서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요인 증가와 재난의 대규모화에 따른 안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요구 증가,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 국제적 테러위험의 증가 등 이러한 대규모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대응중심의 조직체계는 필수적입니다.

중앙의 소방방재청은 정책사무를 중심으로 가야하고 지방의 재난조직은 현장대응 중심의 집행사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참사2주년이 다가온 대구중앙로 지하철역 방화사건으로 125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중부상한 큰 재난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난발생에 대한 책임한계 모호 및 업무중복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부서별 조직체계가 달라 통합현장 지휘 체계 확립이 곤란했으며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은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대응을 중심으로 예방, 대비, 대응, 수습 등 4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수행되어야 함에도 일반행정직은 예방단계를, 소방은 대응업무만을 관장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논리전개로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직개편방안으로서 기본방향으로는 지역재난관리를 현장대응 중심을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재난관리 전반에 걸쳐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 수평부서간 공조를 통한 재난관리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긴급재난대응 실무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역 긴급구조통제관으로 재난현장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집행기능 강화 및 예산의 경제적 운용으로 의사결정 및 보고과정 단순화,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의 전문성, 신속성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본부로 운영, 중앙과 신속히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재난관리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경제적 운용을 위해서는 소방방재본부로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및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실무기능을 맡을 전담부서 설치가 긴급히 필요하고 기초단체장의 원활한 재난사항의 파악 및 지휘를 위해서는 시군 소방공무원의 상시파견제 또는 교환근무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개선하는 대로 통합운영 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보 가능한 물론 조직의 통합으로 재난관련 정보공유가 용이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차 본회의(2005. 2. 22)

장미향의원 (상주시, 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2004년 7월15일 정부는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신활력지역 육성사업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대학, 기업, 연구소, NGO, 언론 등이 힘을 모아 지역개발을 이루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그에 따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낙후지역 70여 곳이 3년 동안 각각 90억에서 120억 정도의 지원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공공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내의 경우 신활력지역에 포함된 시군은 상주와 문경, 의성, 청송, 영양 등 모두 13개 시군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도내에서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군은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그 동안의 소외감과 낙후성을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토개발의 불균형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격차 등을 생각한다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활력지역 육성사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활력지역 육성사업은 자칫 졸속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당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하고도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활력지역 육성사업의 취지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으로 과연 우리 경북의 낙후된 농어촌 지역이 하루 아침에 살기 좋은 지역 시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큰 의문입니다.

신활력지역 육성사업은 전국의 지자체 234곳 가운데 대도시 지역을 빼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나눠주기식 예산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한 건 구축에도 많은 예산이 들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100억원도 버거운 마당에 기껏 연간 2, 30억원 지원해서 얼마만한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며, 자칫하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흐지부지 되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도내의 신활력지역은 소득인프라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낙후 지역임을 감안할 때에 3년간의 시행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활력사업비를 지원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재원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원 예산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면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신활력지역 육성사업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경북도내에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연구인력이나 정보 등 기초적인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매우 취약하여 지역발전 전략 구상이나 수익 창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공동지원단, 혹은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활력지역 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효율적인 신활력지역 개발을 위해 경상북도의 고위공무원, 지역대학 및 각종 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 경북의 시민단체, 언론 등은 물론 출향인사, 향토기업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썩크탱크, 일명 '신활력지역사업 공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와 아울러 지역 역량에 대한 치밀한 고려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활력지역 육성사업의 추진일정이 너무나 촉박하여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추진 일정을 다소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지역주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내의 일선 시군은 재원이나 인적자원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 역량이 아직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방관하지 말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특색 있는 종합적 지원대책을 수립, 일선 시군의 고충을 수렴하고 수합하여 중앙정부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SOC가 빠른 시일내에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시설도 지역의 여건에 맞게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발빠른 대책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조 례 안 : 6건】

-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2. 1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기획위원회”를 “기획과학위원회”로 하고, 동조 동항 제5호 “농수산위원회”를 “농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기획위원회”를 “기획과학위원회”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중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을 “기획관리실, 과학정보산업국,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중 “사회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한다.

동조 동항 제4호 나목중 “보건환경산림국”을 “환경산림수산국”으로 한다.

동조 동항 제5호 “농수산위원회”를 “농정위원회”로 하고, 동조 동항 제5호 가목중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한다.

동조 동항 제7호 가목중 “건설도시국”을 “건설도시재난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 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기획위원회</u> 10명 이내 3. (생략) 4. (생략) 5. <u>농수산위원회</u> 10명 " 6. (생략) 7. (생략)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가. ~ 다. (생략) 2. <u>기획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u>기획관리실</u>,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사회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치행정국, <u>사회복지여성국</u>, 경도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교육환경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보건환경산림국</u>,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u>농수산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건설소방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건설도시국</u>,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p>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기획과학위원회</u> 10명 이내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농정위원회</u> 10명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u>기획과학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기획관리실, 과학정보 산업국, 공무원교육원</u>, ----- 3. ----- 가. -----<u>보건복지여성국</u>,----- ----- 4. ----- 가. ----- 나. <u>환경산림수산국</u>, ----- ----- 5. <u>농정위원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농정국</u>, ----- 7. ----- 가. <u>건설도시재난국</u>,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2. 2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소관사무)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 내지 20호를 제7호 내지 19호로 한다.

제4장 사업소 “제9절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다음에 “제10절 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

제67조(설치) ①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이하 “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200번지에 둔다.

제68조(소장) 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 정보화 기술지원사업 종합기획 추진
2. 농어업 경영지원 및 성과 조사분석
3. 농어업정보 DB구축 등 종합전산망 관리
4. 농어업 정보기술보급 인터넷방송
5. 기타 고품질 친환경생명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6. (생 략)</p> <p>7. <u>종합전산망 관리 및 인터넷 방송 등 농업정보센터 운영</u></p> <p>8. ~ 20. (생 략)</p> <p><u><신 설></u></p>	<p>제18조(소관사무)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7. ~ 19. (현행과 같음)</p> <p>제10절 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p> <p>제67조(설치) ①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친환경 생명산업지원사업소(이하 “친환경생명 산업지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200번지에 둔다.</p> <p>제68조(소장) 친환경생명산업지원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6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p>1. <u>농어촌 정보화 기술지원사업 종합 기획 추진</u></p> <p>2. <u>농어업 경영지원 및 성과 조사분석</u></p> <p>3. <u>농어업정보 DB구축 등 종합전산망 관리</u></p> <p>4. <u>농어업 정보기술보급 인터넷방송</u></p> <p>5. <u>기타 고품질 친환경생명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u></p>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2. 2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63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1명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25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3명

제3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 중 72명(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인력 1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 운영인력 4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운영인력 1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운영인력 17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조경사업추진인력 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인력 22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별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합 계		3,863	1,098	93	2,290	38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1,274	900	55	75	244
	2~3급	1		1		
	3 급	7	6		1	
	4 급	61	40	7	5	9
	5 급	237	188	8	17	24
	6 급	437	312	18	27	80
	7 급	454	318	20	22	94
	8 급	77	36	1	3	37
별 정 직	소 계	33	22	5	5	1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4	4			
	6급상당	13	7	2	4	
	7급상당	7	6		1	
	8급상당	4	2	1		1
연 구 직	소 계	196	2		164	30
	연구관	27	1		25	1
	연구사	169	1		139	29
지 도 직	소 계	28			26	2
	지도관	7			6	1
	지도사	21			20	1
소 방 직	소 계	1,925	47		1,878	
	소방정	16	2		14	
	소방령	27	9		18	
	소방경	60	6		54	
	소방위	125	10		115	
	소방장	259	10		249	
	소방교	544	9		535	
	소방사	894	1		893	
기 능 직	소 계	362	126	33	98	105
	6 급	11	5	1	3	2
	7 급	32	18	3	6	5
	8 급	54	12	5	17	20
	9 급	118	36	4	37	41
	10 급	147	55	20	35	37
교 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2. 2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또한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 of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도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시·군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제정 이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2. 2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세정회계과장, 주택지적과장(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
을 “지방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중 “1,000분의30”을 “1,000분의20”으로 한다.

제42조 본문중 “저작인접권”을 “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조에서 저작권 등이라 한다)”로 하
고, 동조 제1호중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상속”을 “저작권 등의
상속”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 제3항 및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제3항, 제73조
및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을 “제1호 내지 제2호의2 외의 등록”으로 한다.

2의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제59조중 “건축물”을 “건축물(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로 한다.

제65조제1호 각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법 제242조를 적용한다.

제100조중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를 “담배소비세”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중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4조본문,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5조중 “경상북도세부과징수규칙”을 “「경상북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9조제3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제34조중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고, 제42조제2호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하고, 제44조제2호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하고, 제53조제1호중 “경륜·경정법”을 “「경륜·경정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마사회법”을 “「한국마사회법」”으로 하고, 제83조제7호, 제8호, 제84조제2항중 “해운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하고, 제85조중 “개항질서법”을 “「개항질서법」”으로 하고, 조례

제2625호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항본문, 동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조례 제2673호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조중“자동차관리법”을“「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p> <p>①~③(생략)</p> <p>④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u>세정회계과장, 주택지적과장(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u>과 시행규칙</p>	<p>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p> <p>-----<u>지방세업무 담당과장</u>-----</p>
<p>제39조 제3항(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한한다) 및 시행규칙 제42조제2항(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p>
<p>제29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2.(생략)</p> <p>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p> <p>가.(생략)</p> <p>나.기타 - 부동산가액의 <u>1,000분의 30</u></p> <p>4.~8.(생략)</p>	<p>제29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p> <p>-----</p> <p>-----</p> <p>1.~2.(현행과 같음)</p> <p>3.-----</p> <p>-----</p> <p>가.(현행과 같음)</p> <p>나. -----<u>1,000분의 20</u></p> <p>4.~8.(현행과 같음)</p>
<p>제42조(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 또는 <u>저작인접권</u>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p>	<p>제42조(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p> <p>-----<u>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u></p>

<p>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 ----- -----</p>
<p>②(생략)</p> <p>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u>5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u> <u>1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u> <u>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u> <u>3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u> <u>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u> <u>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u></p>	<p>②(현행과 같음)</p> <p>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 ----- -----.</p> <p>1.----- ----- ----- ----- -----.</p> <p><u>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u> <u>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u> <u>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u> <u>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u> <u>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u> <u>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u></p>
<p>제6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p> <p>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p> <p>2. 납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p>제6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법 제242조를 적용한다.</p>
<p>제10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p>	<p>제100조(납세의무자)----- ----- -----</p>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2. 22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긴급자동차를 지원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원동기의 가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원동기의 가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4. 제한지역의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
5. 가스사용 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초기 출발전 10분 이내에 한 한다

제6조(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 ①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등 원동기 가동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별지 제3호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소지하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단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단속담당공무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가동시간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가동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가동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단속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원동기 가동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부과·징수)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59조 제2항 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②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원동기 가동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원동기 가동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
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 가동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
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	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경상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원동기 가동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서(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원동기 가동 제한 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원동기 가동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경상북도자동차공회 전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 가동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	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경상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 가동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NO.

귀하의 자동차는 원동기 가동제한 위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 2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시청·군청 환경○○과 에 오시거나, 서면(우편·FAX : 전화번호, 회신받을 주소, 인적사항을 필히 기재)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 가동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원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원동기 가동제한 위반이 됩니다.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위반 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③ 위반 장소			
④ 위반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 36조의3및경상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조례 제4조)			
⑤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과 :○○시(군)○○동(면)○○번지 TEL , FAX)

200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자동차소유자(운전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공회전 단속요원증

(앞면)

제 호
자동차공회전 단속요원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번 호:
위 사람은 경상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공회전 위반차량 단속요원임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뒷면)

1. 본증 소지자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을 위한 활동, 공회전행위에 대한 단속 및 신고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수 없다.
※ 신고처 : 경상북도 환경관리과 ☎ 000 - 0000
※ 유효기간 : 200 . . 까지

※ 제작기준

- 크기 : 가로 5cm, 세로 8cm
- 색깔 : 표지는 하늘색, 글씨는 검정색

공회전 제한지역 (IDLING RESTRICTED AREA)



= 여기서부터 100M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시(도)조례제○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03년 ○월 ○일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결 의 안 : 1건】

-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 규탄
결의문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관련 규탄 결의문

지난 1월 13일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엄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2월 22일을 이른 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키로 하고 언론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일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시마네현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당시 일제가 엄연히 한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다케시마’로 불렀는데 이를 두고 시마네현의회가 100년 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그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우리의 고종 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독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독도 편입의 논거인 ‘무주지 선점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우리 경상북도는 이번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직접 관련된 시마네현과는 1990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제 교류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상호친선을 도모해왔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도 시마네현의회와 1990년부터 의회친선방문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에는 도 의회 친선의원연맹과 현 의회 일한친선의원연맹과의 사이에 공식적인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까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명실상부한 교류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양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렵게 쌓아온 소중한 우정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 동안 신의로 대하여 온 300만 경상북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는 굳은 결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어불성설의 역지를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경상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시마네현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一,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300만 경상북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 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약속하라
- 一,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바와 같이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통렬히 깨닫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 一, 경상북도는 일본의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라
- 一, 경상북도는 우리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일본의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양 도·현 및
시·군, 민간단체간 일체의 교류중단은 물론 교류원 소환과
자매결연을 파기하는 등 그에 상응한 외교적 조치를 강행
할 것이다.

一,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가 져야 할 것이며,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시마네현의회와의 일체의 교류를 중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2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

의정활동보고서(제196회 임시회)

2005. 3 인쇄 / 2005. 3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